

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원격수업 운영규정

2. 규정류(제정·개정)사유 :

(취약계층 학습권 보장)의 운영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조항 신설 필요. 교육부 「대학 중심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 평가 시 취약계층 포용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어, 본교 규정 차원의 명시화가 사업 추진에도 유리. 현행은 「(별도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으로만 위임하고 있어 일반 원격수업의 출석 처리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원격교육 학점 사항의 소관 규정이 학사 행정 영역임을 본 운영 규정에서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학내 규정 간 위계 정합성 확보

3. 주요 내용 :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가. 제2조 (용어의 정의) 5.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신설>

나. 제2조의2 (취약계층 학습권 보장) ① 본교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국어 학습 안내,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 수단의 제공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은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시행한다. <신설>

다. 제9조의2(외부 콘텐츠 사용) ① “외부 콘텐츠”란 본교 소속 교원이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콘텐츠로서, 외부의 개인·대학·기관·단체 등이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② 외부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본교의 원격수업 콘텐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본교 소속 교원이 직접 제작하여 K-MOOC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2. 타 대학·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공유·활용하는 콘텐츠

3. 그 밖에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이 승인된 콘텐츠

③ 제2항에 따라 외부 콘텐츠를 원격수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이용허락 및 사용권 등 콘텐츠 활용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④ 외부 콘텐츠의 인정 절차, 활용 범위, 품질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및 「별도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라. 제6조(출석관리) ① 원격수업의 출석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의 출결체크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한 시간 및 콘텐츠 학습 진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출석 인정의 비율, 결석·지각의 인정 기준 및 인정 기간 등 구체적인 출석 처리 기준은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및 「별도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출결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처리규정」 등 학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 개정>

마. 제7조(이수기준 및 학점인정) ① 원격수업의 이수기준 및 이수가능학점은 본교 「학업성적처리규정」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장안대학교 학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원격수업의 이수 학점은 졸업 학점에 포함된다. <일부 개정>

4. 시행 예정 또는 요청일 : 즉시 시행

5. 참고 사항 :

가. 관련규정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내용 없음

다. 관련부서 : 원격교육지원센터

6. 첨부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개정시) 1부.

나. 규정류(개정)안 전문 1부

2026년 7월 15일

관련부서 :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소관부서 : 교무처장

류경옥

류경희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 원격수업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 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정규 수업의 70% 이상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의(교내 J-campus 강의, K-MOOC 강의 및 학점교류 강의 등)을 말한다. 3. 플립러닝이란 심화된 정규 수업을 위해 일부 강의내용을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여 사전 학습을 도모하는 강의를 말한다. 4.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이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수업으로 동조 제2호와 3호를 제외한 수업을 말한다. 또한, 온라인 수업은 정규 수업의 70%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3. 27.)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 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정규 수업의 70% 이상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의(교내 J-campus 강의, K-MOOC 강의 및 학점교류 강의 등)을 말한다. 3. 플립러닝이란 심화된 정규 수업을 위해 일부 강의내용을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여 사전 학습을 도모하는 강의를 말한다. 4.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이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수업으로 동조 제2호와 3호를 제외한 수업을 말한다. 또한, 온라인 수업은 정규 수업의 70%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3. 27.) <u>5. 원격교육 ‘취약 계층 학생’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시행령」 제 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26.00.00.></u>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농어촌학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7개 유형을 원격교육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 후속 신설 조항(취약계층 학습권 보장)의 운영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신설> 제3조~제5조(생략) 제6조(출석관리) ① 원격수업의 출석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의 출결체크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3. 27.) ②—(삭제) (개정 2025. 3. 27.) ③—(삭제) (개정 2025. 3. 27.) ④—(삭제) (개정 2025. 3. 27.) ⑤ 구체적인 출석 처리 기준은 ‘(별도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개정 2025. 3. 27.)	제2조의2(취약계층 학습권 보장) 1. 본교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신설 2026.00.00.> 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국어 학습 안내, 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보조 수단의 제공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은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시행한다.[본조신설 2026.00.00.] 제3조~제5조(현행과같음) 제6조(출석관리) ① <u>원격수업의 출석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의 출결체크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한 시간 및 콘텐츠 학습 진도율을 기준으로 한다.</u> ② <u>출석 인정의 비율, 결석·지각의 인정 기준 및 인정 기간 등 구체적인 출석 처리 기준은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및 「별도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에서 정한다.</u> ③ <u>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출결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처리규정」 등 학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6. 00. 00.]</u>	신설 필요함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제3항(차별 금지) 및 제4조 제2항(취약계층 지원 의무)을 본 규정에서 직접 반영할 필요 - 본교의 별도과정 전담학과 운영과 직접 연계되는 사항 - 교육부 「대학 중심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 평가 시 취약계층 포용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어, 본교 규정 차원의 명시화가 사업 추진에도 유리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제3호는 '원격수업의 출석관리·폐강 및 분반 기준'을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행 본 조는 ②~④항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출석 인정의 구체적 기준이 본 규정에 사실상 부재 - 현행 ⑤항은 '(별도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으로만 위임하고 있어 일반 원격수업의 출석 처리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제11조의2(출석관리)와의 위임 관계 명시 필요 - 콘텐츠 학습 진도율을 출석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본 조에 미명시된 일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7조(학점인정) 원격수업의 이수 학점은 졸업 학점에 포함된다.	제7조(이수기준 및 학점인정) ① <u>원격수업의 이수 기준 및 이수가능학점은 본교 「학업성적처리규정」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u> ② <u>「장안대학교 학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u> ③ <u>원격수업의 이수 학점은 졸업 학점에 포함된다.[전문개정 2026. 00. 00.]</u>	반 학사 사항은 「학업성적처리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학사 행정 위계 정합성 확보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제2호는 '원격수업의 운영, 이수 기준, 이수가능학점 및 평가관리'를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행 본 조는 1개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수기준·이수가능학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재 - 학칙 일부개정(안) 제35조 ⑤항 정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와 정합하여 본 조도 학사 관련 규정 인용 형태로 정비 - 학점 사항의 소관 규정이 학사 행정 영역임을 본 운영 규정에서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학내 규정 간 위계 정합성 확보
제8조~제9조(생략)	제8조~제9조(현행과같음)	
<신설>	제9조의2(외부 콘텐츠 사용) ① “외부 콘텐츠”란 본교 소속 교원이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콘텐츠로서, 외부의 개인·대학·기관·단체 등이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② 외부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본교의 원격수업 콘텐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본교 소속 교원이 직접 제작하여 K-MOOC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 훈령 제463호 제4조제5호(외부콘텐츠 사용·인정 기준을 학칙 등으로 규정) 위계 요구 충족 - 원안 취지 유지 - 현재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4조의 2 「별도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4조의 2에 명시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5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 타 대학·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공유·활용하는 콘텐츠 3. 그 밖에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이 승인된 콘텐츠 ③ 제2항에 따라 외부 콘텐츠를 원격수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이용허락 및 사용권 등 콘텐츠 활용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④ 외부 콘텐츠의 인정 절차, 활용 범위, 품질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및 「별도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0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5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원격수업 운영규정

중포 제2026-0호(개정 2026.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 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정규 수업의 70% 이상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의(교내 J-campus 강의, K-MOOC 강의 및 학점 교류 강의 등)를 말한다.
3. 플립러닝이란 심화된 정규 수업을 위해 일부 강의내용을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여 사전학습을 도모하는 강의를 말한다.
4.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이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수업으로 동조 제2호와 3호를 제외한 수업을 말한다. 또한, 온라인 수업은 정규 수업의 70%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원격교육 '취약 계층 학생'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시행령」 제 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26.00.00.>

제2조의2(취약계층 학습권 보장) 1. 본교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신설 2026.00.00.>

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국어 학습 안내, 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보조 수단의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시행한다.[본조신설 2026.00.00.]

제2장 운영

제3조(운영지원) 원격수업의 운영지원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한다.

제4조(강의개설과 운영) ① 원격수업 강의 개설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교과목으로 개설한다.
2. 이러닝은 오프라인 강의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제외한 전체 강의시간의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3. 원격수업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등록된 시간을 준수하여 운영하되, 온라인 수업 시 별도의 운영 기간을 둘 수 있다.
4. 원격수업은 학기별로 운영하되 오프라인 강의를 포함하여 학기당 15주 이상 편성해야 한다.
- ② 플립러닝은 학기 중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사전 및 사후학습을 지원한다.
- ③ 이러닝과 플립러닝,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은 콘텐츠 개발 교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이러닝과 플립러닝,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의 분반 및 폐강은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조(수강신청) ① 이러닝 및 플립러닝,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의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한다.

② 이러닝 및 플립러닝,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의 수강신청 기간은 본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6조(출석관리) ① 원격수업의 출석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의 출결체크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한 시간 및 콘텐츠 학습 진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출석 인정의 비율, 결석·지각의 인정 기준 및 인정 기간 등 구체적인 출석 처리 기준은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및 「별도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출결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처리규정」 등 학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6.00.00.]

제7조(이수기준 및 학점인정) ① 원격수업의 이수 기준 및 이수가능학점은 본교 「학업성적처리규정」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장안대학교 학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원격수업의 이수 학점은 졸업 학점에 포함된다.[전문개정 2026.00.00.]

제8조(성적평가) 원격수업의 학업성적평가는 본 대학교의 ‘학업성적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① 이러닝은 한 학기 13주차 이상의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차별 콘텐츠는 1학점 당 25분 이상으로 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플립러닝은 정규학기 주차만큼의 콘텐츠 분량을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러닝 및 플립러닝,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 콘텐츠는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텍스트 및 동영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강의자는 콘텐츠를 제작,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강의내용과 강의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콘텐츠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⑥ 이러닝 콘텐츠는 일부 수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⑦ 이러닝에는 콘텐츠 학습 이외에도 과제, 퀴즈 등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콘텐츠의 학습시간과 상호작용 시간을 더해 학점당 50분 이상의 학습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9조의2(외부 콘텐츠 사용) ① “외부 콘텐츠”란 본교 소속 교원이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콘텐츠로서, 외부의 개인·대학·기관·단체 등이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② 외부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본교의 원격수업 콘텐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본교 소속 교원이 직접 제작하여 K-MOOC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2. 타 대학·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공유·활용하는 콘텐츠

3. 그 밖에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이 승인된 콘텐츠

③ 제2항에 따라 외부 콘텐츠를 원격수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이용허락 및 사용권 등 콘텐츠 활용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④ 외부 콘텐츠의 인정 절차, 활용 범위, 품질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및 「별도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00.00.]

제10조(콘텐츠 의무 사용) ①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는 3년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콘텐츠의 보관과 관리) ① 원격수업 콘텐츠는 매 학기 강의 종료 후 원격교육지원센터와 강의자가 각각 보관한다.

② 개발된 원격수업 콘텐츠의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있으며 총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공개, 대여, 판매할 수 없다.

제12조(강의신청) 이러닝 및 플립러닝,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을 운영하고자 하는 강의자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강의자 선정과 철회) ① 강의자는 강의신청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선정된 강의자는 콘텐츠 개발 실시일 이전에 정당한 사유로 철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자발적 철회를 제한한다.

제14조(강의자에 대한 지원) 이러닝 및 플립러닝 콘텐츠를 개발 또는 개정하는 강의자에게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지원의 철회) 강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강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지원된 개발비의 100%까지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강의과목 수의 제한) 강의자는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이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 교양교과목,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만학도 별도반, 성인학습자과정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8. 16.)

제17조(책임시수 인정) ① 이러닝을 운영하는 강의자는 이러닝 교과목을 제외한 하나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오프라인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이러닝과 오프라인 강의의 합산 시수는 해당 강의자의 책임

시수를 충족해야 한다.

② 오프라인 강의만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이러닝 시수는 초과 시수에 포함시킨다.

제3장 보칙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장안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규정 제16조의 만학도 별도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성인학습자반 연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5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이러닝 신청서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플립러닝 신청서

신청인 정보	(학부)	(학과)
	(교번)	(교수명)
과목 정보	개설학기 : 0000 - 0학기 과 목 명 : 학 점 : 과목코드 : 과목구분 : ☐ 교양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교직 수강대상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분반(A, B, C)	
플립러닝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제작유형	☐ 파워포인트 ☐ 동영상 ☐ 기타 ※ 판서 강의의 경우 컴퓨터 모니터에 펜마우스를 사용하여 진행 가능.	
장안대학교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플립러닝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강의자 선정 확정시 플립러닝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콘텐츠 개발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과장 (인) 장안대학교 총장 귀하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이러닝 신청서

구분	☐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 산업체 위탁반
	☐ 만학도(편입생) 별도반	☐ 성인 학습자

신청인 정보	(학부)	(학과)
	(교번)	(교수명)
과목 정보	개설학기 : 2025 - 1학기 개설학과 : 과 목 명 : 학 점 : 과목구분 : ☐ 교양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교직 수강대상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전공심화)	
개발목적 및 필요성	개발 목적의 타당성, 콘텐츠 내용과 대상 교과목과의 연계성 등 기술	
제작유형	☐ 파워포인트 ☐ 기타	
개설유형	☐ 신규 ☐ 재개설	

장안대학교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러닝 운영계획서에 따라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과장 (인)

장안대학교 총장 귀하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블렌디드 러닝(혼합수업) 신청서

구분	☐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 만학도(편입생) 별도반	☐ 산업체 위탁반 ☐ 성인 학습자
----	---	---

신청인 정보	(학부)	(학과)
	(교번)	(교수명)

과목 정보	개설학기 : 2025 - 1학기 과 목 명 : 학 점 : 과목코드 : 과목구분 : ☐ 교양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교직 수강대상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분반()
--------------	---

구분	☐ 신규운영 ☐ 재운영 ※ 운영자는 25분 이상의 동영상과 학습활동을 온라인수업 시수에 맞게 주차별 제작 및 탑재하여야 합니다.
-----------	--

블렌디드 러닝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	--

제작유형	☐ 파워포인트 ☐ 동영상 ☐ 기타 ※ 판서 강의의 경우 컴퓨터에 펜마우스를 사용하여 진행 가능
-------------	--

장안대학교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블렌디드 러닝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강의를 선정 확정시 블렌디드 러닝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콘텐츠 개발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은 교수 업적평가에서 제외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과장
(인)

장안대학교 총장 귀하